

춘천지방법원 2019. 2. 19 선고 2018가단498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. 22.

판결 선고 2019. 2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강원 홍천군 C 전 101㎡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72.7419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50만 원과 2018. 1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유재현

별지